

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나이 관련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~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6개의 조례에서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법률 제19148호 「행정기본법」(2022.12.27. 일부개정)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없이 법적으로는 「민법」에 따른 나이인 ‘만 나이’를,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이른바 ‘세는 나이’를, 「병역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‘연 나이’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·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었음.
-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·사회적 기준의 통일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 확립을 통해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·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2023.6.28.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개정)부터 안 제6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개정)까지 개별 조례에서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에 대해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하여 “만”표기를 모두 삭제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 및 기준 확립을 위해 「행정기본법」 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행정기본법」에서는 “법령상 나이는 「민법」에 따라 ‘만 나이’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지만 일상생활과 일부 법률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이 달라 이에 대한 법적·사회적 기준이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.”라고 개정사유를 말하고 있으며, 법제처 정비 권고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“만”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연령에 관한 통일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연령 해석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5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5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나이 관련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: 생략

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만 70세”를 “70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만95세”를 “95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만 100세”를 “100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통합돌봄 대상자”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</p> <p>나.·다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 2 조 (정 의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65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
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<u>만 70세</u> 이상의 어르신으로,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</p>	<p>제 3 조 (지 원 대 상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 <u>70세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</p> <p>1. <u>만 65세</u> 이상 노인세대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65세</u>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주민등록법」상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<u>만95세</u> 이상인 장수노인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 3 조 (지 원 대 상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</p> <p>----- <u>95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<u>만65세</u>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 2 조 (정 의)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<u>65세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효행장려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<u>만 100세 이상</u> 의 부모 등(이하 “부양대상 자”라 한다)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(이 하 “장려금”이라 한다)을 지 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효행장려금의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 <u>100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